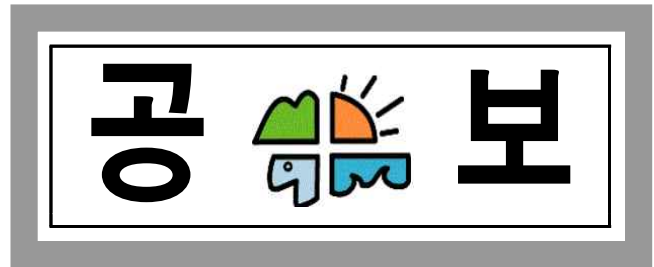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492호 2023년 9월 27일(수)

고 시

- 속초 도시계획시설(공원: 문화공원13) 실시계획인가 고시 2

공 고

-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한 모집 공고 4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5

입법예고

-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9
-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4

발행 : 시 민 소 통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 도시계획시설(공원: 문화공원13) 실시계획인가 고시

속초 도시계획시설(공원: 문화공원13)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5일

속 초 시 장

1. 사업시행자의 위치: 속초시 설악동 246-4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원: 문화공원13)
- 명칭: 도시계획시설(공원: 문화공원13) 조성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속초시장(관광과)
- 주소: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금회 사업규모	비고
공원	문화공원13	A=1,724㎡	A=1,724㎡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5. 5. 31.

6. 법 제99조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문화공원13)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사업면적(㎡)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1	설악동	246-133	대	158	158	강원도	강원도	
2	설악동	246-32	도	21,042	510	국	국토교통부	
3	설악동	246-47	대	448	448	강원도	강원도	
4	설악동	246-50	대	210	210	강원도	강원도	
5	설악동	246-15	도	36	36	강원도	강원도	
6	설악동	296-3	대	396	362	강원도	강원도	
계				22,290	1,724			

● **속초시 공고 제2023-939호**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한 모집 공고

속초시에서 인·허가(발주)된 건축공사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속초시장

1. 공고명 :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한 모집 공고
2. 안전점검 수행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3. 참가자격(모두 해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등록된 업체)
 - 강원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
4. 모집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3. 9. 25.(월) 09:00 ~ 2023. 10. 16.(월) 18:00 (22일간)
 - 제출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청 미래도시국 건축과(2층) (☎033-639-2769)
 - 등록명부 공고 : 2023. 9. 25.(월) (속초시청 홈페이지 sokcho.go.kr - 고시공고)
 - ※ 공고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건축과 방문접수(대리 접수 시 위임장 및 신청자 신분증 첨부)
 - 우편(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 ironhee79@korea.kr
 - * 이메일 접수 시 접수결과를 필히 확인하고 접수결과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붙임 1)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붙임 2)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시 USB 1개.(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동일한 PDF파일 포함)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속초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변경 및 해제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속 초 시 장

1. 목 적: 속초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및 해제
2. 공고방법 :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www.sokcho.go.kr>)게시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9. 27. ~ 2023. 10. 18.
4. 지정해제위치 : 붙임 위치도 참조

시 설 명	소 재 지	지정 구간	변경(해제) 사유
중앙초등학교	속초시 중앙동 509-3	L=470m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청해학교	속초시 장사동 산405-8	L=300m	어린이 보행량 없음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첨)를 속초시 건설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3-639-2485)

라. 보내실 곳: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건설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속초시 건설과(☎033-639-2487)

바.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 위치

■ 시 설 명: 중앙초등학교 / 속초시 중앙동 509-3

당초(현재)



변경(예정) / 변경로(90m)



■ 시 설 명: 청해학교 / 속초시 장사동 산405-8 / 전체구간 해제(동해대로4511번길)



〈별첨〉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입법예고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입법예고 생략 및 재입법예고(안 제5조)

라. 입법예고 방법 및 기간(안 제6조~제7조)

마. 예고 입법안 의견 제출 및 처리(안 제8조)

바. 공청회 개최 및 의견 청취(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불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1)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감사법무담당관(법무팀)

2) 연락처 : 전화 033-639-2806, FAX 033-639-2702

3) 전자문서 : shin8042@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감사법무담당관 법무팀(033-639-28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규정에 따라 속초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의 등) 입법안의 내용이 개별 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에서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나 승인을 받은 후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입법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 ①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법예고문을 시 공보와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안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3. 입법안 전문(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시의 중요정책이나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인터넷이나 신문 등의 매체에 이를 예고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고 하는 경우 입법업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입법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처리결과 등을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① 시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법안인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공고 제2023-945호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직장운동 경기부 단원의 의무 신설, 근무 상한연령 폐지, 우수선수 유치비 등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상향하여 체계적인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하고자 관련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5조(단원의 의무) 및 제16조(인권보호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실시) 신설
- 제22조(근무상한연령) 삭제
- 단원 사기진작을 위한 획정호봉, 우수선수 유치비용, 대회 입상 장려금 등 상향 및 특별승급 범위 확대(별표 1~4)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문화체육과 (시민건강진흥팀)
- 2) 연락처 : 전화 033-639-2407, FAX 033-639-2345
- 3) 전자문서 : jiyeon0210@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문화체육과 시민건강진흥팀(033-639-24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고용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하고,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며, 제15조, 제16조,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5.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및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단원은 스포츠 인권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단원 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6조(인권보호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실시) 단원은 인권 보호 및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

1. 인권 교육
2.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3. 그 밖에 인권 보호 및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

제31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표 제1호부터 별표 제4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임명서류)②고용계약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임명서류)②고용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준 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u><신 설></u>	제15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 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 를 준수하며 체육인으로서 기 량 향상에 노력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단원은 직무 를 수행함에 있어 단장의 직 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 다. 3.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단원 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 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 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 임할 수 없다. 5.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신 설>

제15조 ~ 제21조 (생 략)

제22조(근무상한연령) ①단원의
근무 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 60세
2. 코치 : 45세
3. 선수 : 35세

②단원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청렴 및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단원은 스포츠 인권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단원 간 인
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다.

제16조(인권보호 및 성폭력 등 예
방교육 실시) 단원은 인권 보호
및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

1. 인권 교육
2.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3. 그 밖에 인권 보호 및 성폭
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해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

제17조 ~ 제23조 (현행 제15조부
터 제21조까지와 같음)

<삭 제>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
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
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
한다.

③단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본인
의 신청에 따라 훈련성적 또는
지도능력이 뛰어난 단원에 대하
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 승인할 수 있다.

제23조 ~ 제29조 (생략)

<신설>

제24조 ~ 제30조 (현행 제23조부
터 제29조까지와 같음)

제31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
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
률」에 따른다.

[별표 1]

선수 등급별 획정호봉 및 점수 기준(제10조 관련)

1. 등급별 획정호봉

- 임명일을 기준으로 임명 전 1년 동안의 각종 대회 입상실적을 점수로 환산하여 등급조정

(1) A 등급 : 7급 8호봉

(2) B 등급 : 7급 5호봉

(3) C 등급 : 7급 3호봉

2. 등급별 점수

(1) A 등급 : 15점 이상

(2) B 등급 : 7점 이상 ~ 15점 미만

(3) C 등급 : 7점 미만

3. 입상실적별 점수 기준

구 분	1등	2등	3등	비 고
국제 대회	30	20	15	
전국 체전	10	7	5	
전국 대회	7	5	3	

[별표 2]

특별승급 기준(제11조의2 관련)

구분	해 당 성 적	비 고
선수	· 올림픽경기대회 1위 입상	5호봉
	· 올림픽경기대회 3위 이내 입상 · 아시안게임 1위 입상 ·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	3호봉
	· 아시안게임 3위 이내 입상 · 세계선수권대회 3위 이내 입상 · 아시아선수권대회 1위 입상 · 국제대회(오픈대회) 1위 입상	2호봉
	· 전국체육대회 2관왕 이상 · 아시아선수권대회 3위 이내 입상 · 국제대회(오픈대회) 3위 이내 입상	1호봉

[별표 3]

우수선수 유치비(제14조제1항 관련)

급 수	유 치 비 기 준	지 급 액 (연간)	비고
A 급	·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자 · 지난 2년 이내의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 규모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 3회 이상 입상 경력자 · 전국 규모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당해 종목의 한국 신기록 수립자	30,000,000원 이내	
B 급	· 지난 2년 이내의 전국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 1회 이상 입상 경력자 · 지난 1년 이내에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한 자	10,000,000원 이내	
C 급	· 지난 2년 이내의 전국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내의 입상 경력자	5,000,000원 이내	

[별표 4]

국내·외 입상단원에 대한 장려금 지급기준 (제28조제2항 관련)

구 분		1등	2등	3등
올림픽경기대회	개인	10,000,000원	7,000,000원	5,000,000원
	단체	10,000,000원	7,000,000원	5,000,000원
아시안게임	개인	7,000,000원	5,000,000원	3,000,000원
	단체	7,000,000원	5,000,000원	3,000,000원
세계선수권대회	개인	5,000,000원	3,000,000원	1,000,000원
	단체	5,000,000원	3,000,000원	1,000,000원
국제대회 (아시아대회 포함)	개인	2,000,000원	1,500,000원	1,000,000원
	단체	4,000,000원	3,000,000원	2,000,000원
전국체전	개인	1,500,000원	1,000,000원	500,000원
	단체	3,000,000원	2,000,000원	1,500,000원
전국규모대회	개인	1,000,000원	500,000원	300,000원
	단체	2,000,000원	1,500,000원	1,000,000원

[비 고]

- ① 개인전에서 입상한 경우, 올림픽경기대회·아시안게임 또는 세계선수권대회는 해당 선수에게 100퍼센트 지급, 감독 및 코치에게는 각각 50퍼센트 지급하며, 국제대회(아시아대회 포함)·전국체전 또는 전국규모대회는 해당 선수와 감독 및 코치에게 각각 100퍼센트를 지급한다.
- ② 단체전에서 입상한 경우, 올림픽경기대회·아시안게임 또는 세계선수권대회는 해당 선수단에게 100퍼센트 지급, 감독 및 코치에게는 각각 50퍼센트 지급하며, 국제대회(아시아대회 포함)·전국체전 또는 전국규모대회는 해당 선수단과 감독 및 코치에게 각각 100퍼센트를 지급한다.
- ③ 단, 전국의 5개 팀 이하가 출전한 전국 대회와 시범 경기에 출전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